

##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

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8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

### 1. 조례안 목록

- 순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2. 18. ~ 2. 22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gowoon@korea.kr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#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제2917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8.

발 의 자 : 이현재, 이복남

## 1. 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순천시 지하도상가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사항 정비(안 제6조)
  - 사용허가기간 : 10년 이내
  - 갱신 : 5년 단위 1회
-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개정 법 시행일(2018. 12. 11)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(부칙)
  -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개정 법 시행 이후 입점자와 같도록 함.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4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

#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존 입점자에 대한 허가 및 갱신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 시행일 이전에 입점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제6조의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점포 또는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</p>



#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제2917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8.

발 의 자 : 이현재, 이복남

## 1. 개정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순천시 지하도상가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사항 정비(안 제6조)
  - 사용허가기간 : 10년 이내
  - 갱신 : 5년 단위 1회
-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개정 법 시행일(2018. 12. 11)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한 경과 규정 마련(부칙)
  -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개정 법 시행 이후 입점자와 같도록 함.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4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

#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기존 입점자에 대한 허가 및 갱신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 시행일 이전에 입점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제6조의 사용허가기간으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점포 또는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은 법 제21조에 따르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사용허가 기간 및 갱신)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에도 불구하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조건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</p>

#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종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2916호
----------	--------

○ 발의연월일 : 2019. 2. 18.

박종호, 남정옥, 최병배,

○ 발 의 자 : 이영란, 이현재, 김미연,  
이복남

## 1. 제정이유

-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순천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(안 제7조)
- 조례 제·개정 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조항 반영(안 제8조)
- 준용,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## 3. 제정조례안 : 별 첨

## 4. 관련법령 : 「병역법」 제82조

## 5. 예산상황 :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## 6.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

- 전라남도 : 여수시, 광양시, 장흥군 등 3개 시·군
- 이 외의 지방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남구, 청주시 등 51개 시·군

##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2. “예우대상자”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순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·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.

**제5조(예우 및 홍보)**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우대)**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주차료·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  
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  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협조요청)**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  
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 
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시장은 시에서 설치, 관리,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 
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  
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병역명문가 선정  
및 표창 운영규정」을 준용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